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의의결 절차 개선(형사사법 체계 정비)〉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44호)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45호)

2026. 9.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3

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9. 9.
- (3) 회 부 일 : 2026. 9.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9. 9.
- (3) 회 부 일 : 2026. 9.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에서 각각 규정하는 동의의결 절차 중 형사사법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정거래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② (생략)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u>한다</u> .	③ ----- ----- ----- ----- ----- ----- ----- 하고, 검찰총장은 <u>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
④ ~ ⑪ (생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방문판매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3(동의를결 절차) ① · ② (생 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 어야 한다. 다만,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의3(동의를결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하고,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u> <u>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 동의를결 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임.

□ 현행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과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은 각각 동의를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의를결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개요, 관련 법령 조항 및 시정방안

등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¹⁾

□ 또한, 공정거래법 제90조제3항과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3항에서는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개요, 관련 법령 조항
및 시정방안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하되, 동의를결의 대상행위가 별척부과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²⁾

□ 현행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별척부과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관한
동의를결을 할 때에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부여

1) **공정거래법** 제90조(동의를결의 절차)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방문판매법 제50조의3(동의를결 절차)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계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5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2) **공정거래법** 제90조(동의를결의 절차)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방문판매법 제50조의3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 전속고발권³⁾의 취지,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다는 점,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⁴⁾는 동의의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임.

□ 개정안들은 벌칙부과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의의결 시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과 협의하고, 이때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방문판매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과 협의하고,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듣게 하려는 것임.

□ 개정안들은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⁵⁾에서 수사-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가 폭넓게 변경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타당한 입법임.

- 공정거래법에서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3)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공정거래법** 제8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 2026년 10월 2일 시행예정

의견을 모두 청취하도록 하는 반면, 방문판매법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만 듣도록 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24조와 제125조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인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반면, 방문판매법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 의 처
02)6788-5109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